

석좌교수에 관한 규정

제정 2013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본 대학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석좌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석좌교수 추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자격) 석좌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있는 자
2. 학술분야 등 특정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이거나 본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또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3.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

제4조(임기) 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추대절차) ① 총장이 석좌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석좌교수의 추대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공적서
2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6조(복무)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강의 또는 연구
2. 특별강연 및 세미나
3. 본 대학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제7조(처우) ① 석좌교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, 필요한 때에는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석좌교수 보수가 외부 기금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에 따른다.

제8조(해임) 석좌교수는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